강사료·자문료·심사료지급 규정

제정	:	1999.	9.	1.
개정	:	2011.	6.	30.
개정	:	2016.	3.	9.
개정	:	2016.	9.	20.
개저	:	2019	3	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전임교원의 초과 강사료, 비전임교원, 내·외부강사, 내·외부자문 위원 및 내·외부심사위원에 대한 강사료, 자문료, 심사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사료·자문료·심사료) ①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 기준액은 매학 년 초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② 1교시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모든 교과목의 강의 담당시간 계산은 그 교과목의 시수와 동일하게 한다.
- ④ 내·외부강사, 내·외부자문위원 및 내·외부심사위원에 대한 강사료, 자문료, 심사료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조(강사료·자문료·심사료 지급) ①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에 대한 강사료는 매학기 확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해 지급한다.
 - ② 내·외부강사, 내·외부자문위원 및 내·외부심사위원에 대한 강사료, 자문료, 심사료는 사전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실제로 시행한 실적에 의해 지급한다.
- 제4조(책임시간)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13시간으로 하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강사료를 지급한다. (초과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)
 - ② 보직교수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강사료·자문료·심사료 지급일) ①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강사료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

-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사료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내·외부강사, 내·외부자문위원 및 내·외부심사위원에 대한 강사료, 자문료, 심사료의 지급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2016. 3. 1.이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